

1. 개정이유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일정한 국가의 경우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를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에 갈음하여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적은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686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를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적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대리인 선임신고가 면제되는 서류를 추가하고, 이미 제출된 디자인등록출원 등에 관한 서류·건본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제출자의 신청이 있으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그 서류 등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리인 선임신고 제외 대상 서류(안 제7조제2항)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여야 하나,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의 우선권증명서류,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의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을 해당 서류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특허고객번호 의무 신청 제외 대상(안 제14조제1항)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하나,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이 본인의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서류 등의 반환(안 제24조의2 신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하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의 청구 등에 관한 서류·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 중에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제출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방법(안 제47조제2항 및 제5항 신설)

1) 외국에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의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국가를 특허청과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로 정함.

2)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 서면에 적는 정보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7. 12. ~ 8.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보정 또는 지정기간연장신청을 하는”을 “보정, 지정기간연장신청, 우선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하는”으로, “보정서 또는”을 “보정서,”로, “연장신청서”를 “연장신청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이 법 제179조에 따라 본인의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를 ““출원서류등”이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출원서류등의 반환)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특허청과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47조제4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를 “하며, 이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어야 하는 정보로서 해당 전자적 접근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이하 “접근코드”라 한다)를 말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

의 출원번호 및 접근코드를 적음으로써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 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2장에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① 외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그 증명서를 특허청장이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전자적 접근 서비스를 통하여 송달(세계지식재산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접근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또는 접근코드 부여의 신청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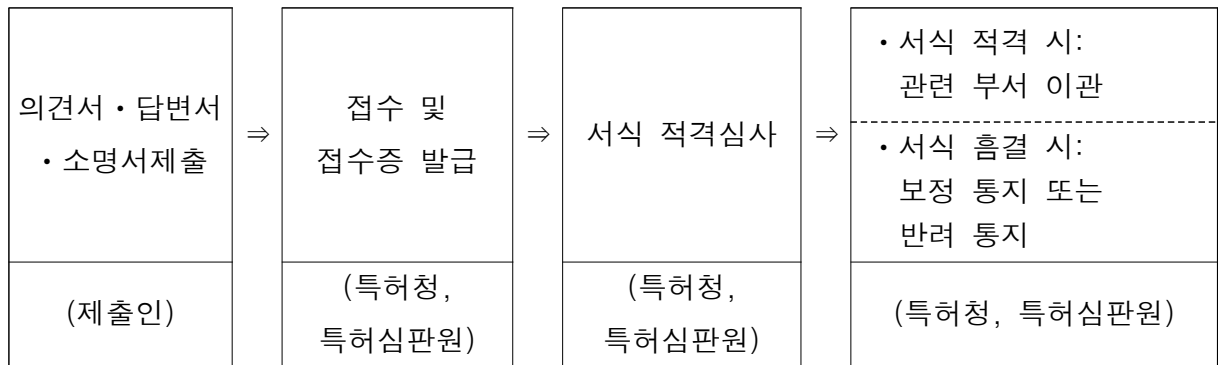
제63조 중 “적어, 설정등록료를 납부할 때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와 함께”를 “적어”로 한다.

제95조제1항제2호 중 “심결문송달증명 신청과 외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한 증명서의 발급”을 “심결문송달증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기재방법 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2) 중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

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를 “미성년자”로, “【법정 대리인 등】”을 각각 【법정대리인】으로, “법정대리인 등”을 “법정대리인”으로 한다.

2. 처리절차



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 1) 【특허고객번호】란을 기재하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 2) 【주소】란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항목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3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2) 중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를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 등】”을 각각 【법정대리인】으로, “법정대리인 등”을 “법정대리인”으로 한다.

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 1) 【특허고객번호】란을 기재하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 2) 【주소】란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항목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0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합계】란의 다음 줄에 【감면(면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우선권 주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 제3호 다목4) 중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거나 미성년자”를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 등】”을 각각 【법정대리인】으로, “법정대리인 등”을 “법정대리인”으로 하고, 같은 쪽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출원일(국제등록일)】

【증명서류】 첨부 미첨부

【접근코드】)

1. 【출원 구분】란

가. 출원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합니다.

나.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은 별표 4(물품류 구분)에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해당되는 물품류(2류, 5류, 19류)를 제외한 물품류가 해당됩니다.

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별표 4(물품류 구분)에서 2류, 5류, 19류가 해당됩니다.

14. 【우선권 주장】란

【우선권 주장】란은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서 최초에 출원한 【출원국명】 , 【출원번호】 및 【출원일】 을 적고, 우선권 주장 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첨부”라고 적으며, 그 서류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미첨부”라고 적습니다. 다만, 출원국명이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인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첨부”라고 적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제6항에 따라 접근코드를 적으려는 경우에는 【접근코드】란에 해당 접근코드를 적고 접근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지 않으며,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US

【출원번호】 98-123456

【출원일】 1999. 07. 01.

【증명서류】 첨부

【접근코드】 4321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JP

【출원번호】 62-1234

【출원일】 1999. 08. 01.

【증명서류】 미첨부

【접근코드】 8765

별지 제6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호다목2) 중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거나 미성년자”를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 등】”을 각각 【법정대리인】으로, “법정대리인 등”을 “법정대리인”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호다목2) 중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거나 미성년자”를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 등】”을 각각 【법정대리인】으로, “법정대리인 등”을 “법정대리인”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2호다목 중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를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 등】”을 각각 【법정대리인】으로, “법정대리인 등”을 “법정대리인”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제13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제17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2호다목2) 중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를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 등】”을 각각 【법정대리인】으로, “법정대리인 등”을 “법정대리인”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호다목2) 중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를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 등】”을 각각 【법정대리인】으로, “법정
대리인 등”을 “법정대리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서류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
칙 시행 전에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에 대해서도 적
용한다.

디자인등록증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등록제	호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제	호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출원일	년	월	일
	(FILING DATE: YY/MM/DD)			
	등록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YY/MM/DD)			
	등록의 구분		심사등록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물품류(CLASS)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PRODUCT)

디자인권자(OWNER)

창작자(CREATOR)

위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년 월 일

특허청장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명

디자인등록증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등록제 호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제 호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출원일 년 월 일
(FILING DATE: YY/MM/DD)
등록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YY/MM/DD)
등록의 구분 일부심사등록
(TYPE OF REGISTRATION) (PARTIALLY EXAMINED REGISTRATION)

물품류(CLASS)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PRODUCT)

디자인권자(OWNER)

창작자(CREATOR)

위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년 월 일

특허청장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명

이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신규성 등) 및 제46조(선출원) 등의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권리입니다.

관련디자인등록증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등록제 (REGISTRATION NUMBER)	호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APPLICATION NUMBER)	제	호
		출원일 (FILING DATE: YY/MM/DD)	년	월 일
		등록일 (REGISTRATION DATE: YY/MM/DD)	년	월 일
		등록의 구분 (TYPE OF REGISTRATION)	심사등록 (EXAMINED REGISTRATION)	
		기본디자인 (PRINCIPAL DESIGN)	등록제 (REGISTRATION NUMBER)	호

물품류(CLASS)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PRODUCT)

디자인권자(OWNER)

창작자(CREATOR)

위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년 월 일

특허청장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명

관련디자인등록증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등록제 (REGISTRATION NUMBER)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APPLICATION NUMBER)	제 호
	출원일 (FILING DATE: YY/MM/DD)	년 월 일
	등록일 (REGISTRATION DATE: YY/MM/DD)	년 월 일
	등록의 구분 (TYPE OF REGISTRATION)	일부심사등록 (PARTIALLY EXAMINED REGISTRATION)
	기본디자인 (PRINCIPAL DESIGN)	등록제 호 (REGISTRATION NUMBER)

물품류(CLASS)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PRODUCT)

디자인권자(OWNER)

창작자(CREATOR)

위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년 월 일

특허청장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명

이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신규성 등) 및 제46조(선출원) 등의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권리입니다.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CLASS

PRODUCT

OWNER

CREATOR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명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PRINCIPAL DESIGN

CLASS

PRODUCT

OWNER

CREATOR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 명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YPE OF REGISTRATION PARTIALLY EXAMINED
REGISTRATION
PRINCIPAL DESIGN

CLASS

PRODUCT

OWNER

CREATOR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 명

This design right was granted design registration after partial examination; thus, examination was not conducted on the requirements for novelty and the first-to-file rule, set out in Article 33 and Article 46 under the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

디자인등록증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등록 제 호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제 호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출원 일 년 월 일
(FILING DATE: YY/MM/DD)
등록 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YY/MM/DD)
등록의 구분 심사등록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물품류(CLASS)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PRODUCT)

디자인권자(OWNER)

창작자(CREATOR)

위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년 월 일

특허청장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명

등록사항

210mm×148mm(백상지 80g/m²)

디자인등록증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등록 제 호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제 호

(APPLICATION NUMBER)

(REGISTRATION NUMBER) 출원일 년 월 일

(FILING DATE: YY/MM/DD)

등록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YY/MM/DD)

등록의 구분 일부심사등록

(TYPE OF REGISTRATION) (PARTIALLY EXAMINED REGISTRATION)

물품류(CLASS)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PRODUCT)

디자인권자(OWNER)

창작자(CREATOR)

위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년 월 일

특허청장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명

이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신규성 등) 및 제46조(선출원) 등의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권리입니다.

등록사항

210mm×148mm(백상지 80g/m²)

관련디자인등록증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등록사항
등록제호 (REGISTRATION NUMBER)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제호 (APPLICATION NUMBER) 출원일 년 월 일 (FILING DATE: YY/MM/DD) 등록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YY/MM/DD) 등록의 구분 심사등록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기본디자인 등록제호 (PRINCIPAL DESIGN) (REGISTRATION NUMBER)	
물품류(CLASS)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PRODUCT)		
디자인권자(OWNER)		
창작자(CREATOR)		
위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년 월 일		
특허청장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div style="border: 1px solid orange;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서명</div>		

210mm×148mm(백상지 80g/㎡)

관련디자인등록증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등록사항
등록제호 (REGISTRATION NUMBER)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제호 (APPLICATION NUMBER) 출원일 년 월 일 (FILING DATE: YY/MM/DD) 등록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YY/MM/DD) 등록의 구분 일부심사등록 (TYPE OF REGISTRATION) (PARTIALLY EXAMINED REGISTRATION) 기본디자인 등록제호 (PRINCIPAL DESIGN) (REGISTRATION NUMBER)	
물품류(CLASS)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PRODUCT)		
디자인권자(OWNER)		
창작자(CREATOR)		
위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년 월 일		
특허청장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div style="border: 1px solid orange;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서명</div>		
이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신규성 등) 및 제46조(선출원) 등의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권리입니다.		

210mm×148mm(백상지 80g/㎡)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REGISTRATION DETAILS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CLASS			
PRODUCT			
OWNER			
CREATOR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서 명</div>			

210mm×148mm(백상지 80g/㎡)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REGISTRATION DETAILS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YPE OF REGISTRATION PARTIALLY EXAMINED REGISTRATION	
CLASS	
PRODUCT	
OWNER	
CREATOR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명	
This design right was granted design registration after partial examination; thus, examination was not conducted on the requirements for novelty and the first-to-file rule, set out in Article 33 and Article 46 under the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	

210mm×148mm(백상지 80g/㎡)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REGISTRATION DETAILS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PRINCIPAL DESIGN		
CLASS			
PRODUCT			
OWNER			
CREATOR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서 명</div>			

210mm×148mm(백상지 80g/㎡)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REGISTRATION DETAILS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YPE OF REGISTRATION PARTIALLY EXAMINED REGISTRATION PRINCIPAL DESIGN	
CLASS	
PRODUCT	
OWNER	
CREATOR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 명	
This design right was granted design registration after partial examination; thus, examination was not conducted on the requirements for novelty and the first-to-file rule, set out in Article 33 and Article 46 under the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	

210mm×148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생략)</p> <p>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견제출, <u>보정 또는 지정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경우</u>: 최초로 제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의 <u>보정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신청서</u></p>	<p>제7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u>보정, 지정기간연장신청, 우선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 보정서, -----</u> -- <u>연장신청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u></p>

1. ~ 18.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제47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 (생략)

<신설>

1. ~ 1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출원서류등의 반환)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특허청과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내용 중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은 한글번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

----- 하며, 이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
른다. -----
-----.

⑤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
는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이란 세계지식
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
(DAS, Digital Access Service)
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어야 하
는 정보로서 해당 전자적 접근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하
여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
여하는 고유번호(이하 “접근코
드”라 한다)를 말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
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면을 제
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
원서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 및

<신 설>

접근코드를 적음으로써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52조의2(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① 외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그 증명서를 특허청장이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전자적 접근 서비스를 통하여 송달(세계지식재산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접근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또는 접근코드 부여의 신청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p>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별 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 ② (생 략)</p>	<p>----- ----- ② (현행과 같음)</p>
---	---------------------------------------